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폐지 등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71호)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75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II. 검토의견	7
1.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폐지	7
2. 재허가·재승인 부관의 법제화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9. 15.

다. 회 부 일 : 2025.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 및 재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폐지함에 따라, 그간 법률에 근거 없이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의무화하였던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제76조의6, 제76조의7, 제92조의4, 제92조의5 신설).

1)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였던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체결 의무와, 계약 체결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의6 신설).

2)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였던 유료방송사업자의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활용을 우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의7 신설).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홈쇼핑 채널)에게 재승인 조건에서 정하여 준수하게 하였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2조의2 신설).

4)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사업자 간 협력 활동 장려를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상생협력사업 지원 및 방송사업자 간 상생협약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2조의4 신설).

5) 그 밖에 재허가·재승인 폐지 이후에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에 관한 자율적 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92조의5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9. 15.

다. 회 부 일 : 2025.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양 법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실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제5조 및 제5조의2 삭제).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폐지함에 따라, 그간 법률에 근거 없이 재허가 조건 부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의무화하였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위한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및 사업자 상호 간 상생협력,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허가 폐지 이후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 편익 증진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12조의2·제12조의3·제18조의3 신설).

다.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라.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법 또는 허가·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폐지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SO) 및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 IPTV 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승인 유효기간 및 재허가·재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5항 ----- -----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 -----.
第17條(再許可 등) ①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第17條(再許可 등) 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방송통신위원회----- ----- 제9조제1항----- -----.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	②-----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 행	개 정 안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④ (생 략)	---- <u>방송통신위원회</u>----- -----. ③ <u>방송통신위원회</u>----- ----- ----- -----.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의2(재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	<삭 제>

현 행	개 정 안
<u>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횟수와 그 이행 여부</u> <u>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u>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라 함)에 따르면,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 홈쇼핑PP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7년마다 정부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공적 책임,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여부와 조건(부관)을 결정함.
- 방송사업의 허가·승인은 한정된 자원인 전파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자, 특정 방송권역에서 하나만 인정되는 사업자 또는 네트워크 설비 기반을 보유하여 자연독점의 성격을 지닌 사업자 등에 있어서 권리나 능력 혹은 포괄적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으며, 희소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공공성과 공적책임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재허

가·승인 제도를 통해 공적 책임, 방송산업 발전의 기여도, 허가·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舊방통위 및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문의 한계가 없어 넓은 범위의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¹⁾

○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등록제를 적용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유료방송 업계와 글로벌 OTT 업체 간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글로벌 OTT와의 규제 격차로 인한 국내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규제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편성 등 규제 개선을 밝힌 바 있음.
- 2024년 3월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는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가 원칙의 명시, 소유제한 및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함.

1) 재허가·재승인은 수익적 재량처분에 해당하며, 판례 등에 따르면, 수익적 재량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고, 다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부과해야함.

- 이에 개정안은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방송사업자 간 공정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의무 등 기존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되던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7년마다 반복되는 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규제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특허사업권’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담보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입장이고, 한국방송협회는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재허가·재승인제는 유료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제도 폐지보다는 재허가·재승인 조건 중 필요한 내용은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제외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바람직하고, 종합유선·위성방송·IPTV·홈쇼핑 사

업자에 대해서만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시 나머지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제도를 개선·폐지하기에 앞서,
2023년 IPTV 재허가 조건에 포함되었던 ‘중소PP 상생방안 마
련’이나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이 우선되어야 하고, 재허가·중소PP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해 중소PP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협회**는 특정 사업자군에만 규제 완화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방송 생태계 내 규제 불균형을 야기하고, 공정
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며 지상파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는 광고, 협
찬, 편성, 내용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광고·협찬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 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필
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방미통
위 구성 이후 유료방송 규제 개선 전반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
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한국IPTV방송협회**는 재허가제 폐지 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재허가 부관이 영속적인 허가조건으로 남게 될 것에 대해 우

려한다는 입장임.

- 이를 종합하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7년마다 반복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OTT와의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방송채널진흥협회 등의 우려,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방송협회 측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재허가·재승인 부관의 법제화

- 개정안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방송사업자 간 공정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의무 등 기존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되던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2조의2(중소기업 상품 등의 판매 지원)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식품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전체

현행	개정안
	<u>프로그램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의 소개 및 판매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u>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 상품 등의 범위</u> 2. <u>연간 방송시간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u> <신설> 제76조의6(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 등) ① 방송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협의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고, 그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제76조의7(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 및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 조성,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위하여 방송사업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방송사업자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는 그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서비스의 제공,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에 관한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4(상생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조화로운 발전과 상생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상생 협력과 건전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 등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규정에 따른 시책 및 상생협약, 상생협력사업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마련,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송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92조의5(지속가능한 방송환경 조성) ①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과 방송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청자 편익 증진, 지역 사회 활성화, 난시청 지역 해소,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호,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여 2.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확보와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3.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및 설비 투자 ②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청자 편익 증진, 소비자 보호, 방송 발전의 지원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상생협력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발전과 상생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9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u><신 설></u>	제12조의3(지속가능한 방송환경 조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방송산업의 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9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u><신 설></u>	제18조의3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계약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6조의6, 제7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제21조(생략)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

현 행	개 정 안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 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 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명령이나 허가조건-----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재허가·재승인이라는 주기적 심사는 폐지하되,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부관(조건)’의 형태로 부과되었던 공적 책임 및 공정경쟁 관련 핵심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이에 따라 현재의 주기적·재량적인 심사 방식에서 상시적·법률적인 의무로 규제 방식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기존에 조건으로 부과되던 핵심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졌던 규제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여 규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음.

-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승인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의 경우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규제방식 변경에 맞춰 IPTV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 조치 및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허가취소·

사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IPTV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제3호).

- 재허가·재승인 제도폐지에 보완하여 법률상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무의 범위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동 사항과 관련해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사업자 지정 및 시책 마련 등에 대한 주체는 방미통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방미통위로 일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제화하는 부관 중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해서는 공정경제 주무부처인 공정위와의 협의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법제화하는 부관 중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지속가능한 방송환경 조성 관련, 성실 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장려 수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6